

제333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춘대 의원 발의)

제 안 설 명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임 춘 대
(국민의힘, 기획경제위원회)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송파구 제3선거구 국민의힘 임춘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7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신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위임하거나 위탁할 경우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며,

각 항별로 내부위임, 외부위임 및 공공위탁, 민간위탁, 제3자 위임 및 위탁에 대한 위탁기관장의 승인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는 그 법률적 근거를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로 해야 하지만

동 조례는 위임 및 공공위탁의 근거까지 포함하는 「지방자치법」 제117조를 근거로 하고 있으므로

동 조례의 법적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종전에 민간위탁으로 추진되던 사업을 서울시가 직접 추진하거나 대행 등으로 추진방식을 변경하여 민간위탁이 종료될 경우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부재하였으므로

민간위탁을 종료할 경우에는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집행기관에 대한 시의회의 감시·경제 기능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